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국 · 이스라엘 반트러스트 이기간 협정 조인

미국과 이스라엘 대표는 3월 15일 반트러스트협정을 조인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과 체결한 다섯 번째의 협정이다.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양국경쟁법의 적용과 관계된 미국합중국 정부 및 이스라엘 정부간 협정」이다. 자넷 리노 법무장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로버트 비도후스키 위원장은 미국을 대표하고 나탄 샤런스키 산업무역장관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 협정에 조인하였다.

본 협정의 목적은 양국 경쟁법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충돌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의 반트러스트 정책 집행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 경쟁 당국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데 있다. 미국은 EU, 캐나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 이스라엘 협정은 한 쪽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

향을 주는 반트러스트 활동을 전부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협정은 「적극적 예방」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피통보국내의 반경쟁적 행위가 통보국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으며 또한 통보국이 자국의 법에 의하여 법집행 활동을 하기 전에 피통보국에 대하여 자국의 반트러스트법에 의해서 적절한 법집행활동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동 국장은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반트러스트에 관한 정보 및 반트러스트 정책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양국간에 정기협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1999.3.15, FTC 발표문

미 법무부, 가격고정 혐의로 골드만 삭스사 조사

5월 3일에 일반공모주식의 가격을 책정할 예정인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사는 4월 30일, 미국 법무부가 월스트리트 주식인수 단체들간의 가격고정 혐의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

서 동 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메릴 린치사, 모건 스탠리 딘 워터사, 살로먼 스미스 바니사, 레먼 브라더스사 및 Hambrecht & Quist사도 최근 며칠 사이에 민사조사요구서로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유사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보 요구는 기존의 민사 집단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반공모 계획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골드만 삭스사는 언급하였다.

증권업 분석가들은 이번 조사가 골드만 삭스사 주식의 공모가격설정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당해 주식공모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는 극히 높았으며 이 주식공모는 해당주식 수익의 25배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한 직원은 법무부가 “일반공모주식 인수 서비스에서 반경쟁적 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공모주식의 매수자들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몇몇 집단소송에서는 25개 이상의 회사가 피고로

되어 있으며, 제소자들은 피고들이 이러한 일반주식공모와 관련하여 연방 반트러스트법 위반인 담합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 중 하나에서는 피고들이 "일정한 일반주식공모시에 주식 발행업체로부터 공모주식 인수단체들이 받는 수수료를 7%로 고정하기로 담합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고 골드만 삭스는 일반주식공모 이전에 접수된 최종 답변서에서 언급하였다.

■ 1999.5.1, Financial Times

**미 법무부, American Air
사를 반트러스트 위반으로 기소**

미국 법무부는 5월 13일, 미국 제2위의 대형 항공사인 American Airlines사가 저가 경쟁업체들을 Dallas Fort Worth 외곽의 대형 중추공항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요금을 인하하고 임시증편을 하였다고 하여 동 회사를 기소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다른 항공사들도 미국의 기타 주요 중추공항에서 동일한 영업전술을 구사하지는 않았는지를 동국 직원들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캔사스 주 Wichita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정부는 American Air사가 미국 3위 규모의 공항인 Dallas-Fort Worth 국제공항에서 발착하는 승객 서비스의 독점화 및 독점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주요 항공사들이 저가 경쟁업체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대중이다. 소비자들은 한 항공사가 저가 경쟁업체들을 축출한 결과 초래될 높은 항공권가격을 지불하도록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Janet Reno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였다.

American Air사는 자사 노선을 증편시키고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소규모 신규 항공사들을 반복적으로 DFW 공항에서 몰아내려 하였다고 기소되었다. 경쟁업체들이 철수하거나 편수를 급격히 줄인 이후 American Air사는 높은 요금으로 환원하고 편수를 줄였다고 정부는 주장하였다.

Reno 장관은 American Air사가 Dallas-Forth Worth와 Wichita간의 노선에서 저렴한 요금의 경쟁업체인 Vanguard Airlines사를 축출한 이후 이 노선의 항공요금을 50%나 인상하였다고 하였다.

Klein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merican Air사는 약탈적 대응정책을 채택하였다... American Air사는 이러한 전략이 값비싼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새로운 항공사들을 몰아내고 독점적 가격설정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였다."

American Air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러한 약탈적 관행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자유시장경쟁의 근간에 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Klein 국장은 American Air사의 전략은 Dallas-Fort Worth 시장에 신규 진입한 3개 업체 - Vanguard사, Sun

Jet사 및 Western Pacific사 - 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여행객들에게 미친 영향은 높은 가격과 편수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파멸적이었다"라고 Klein 국장은 덧붙였다.

"여행객들은 이용편수의 감소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귀착되었다"라고 Klein 국장은 언급하였으며, American Air사는 경쟁을 축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간의 손실을 감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해 소송에서는 American Air사의 전임 회장인 Robert L. Crandall이 "경쟁업체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수익 감소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Klein 국장은 정부와 American Air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는 조사중인 다른 항공사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트러스트 전문변호사이자 과거 반트러스트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 Marc Schechter는 정부의 이번 소송은 American Air사가 70%의 승객 운송량으로 DFW 중추공항을 지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항공운송산업이 1978년에 규제완화된 이후 동 산업에서 제기되는 최초의 약탈적 가격설정 사건이다. 과거에 주요 항공사들은 자사의 교통량을 하나 내지 그 이상의 공항에 집중시키기 위해 중추공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중추공항은 승객들에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나, 중추공항을 지배하는 항공사들은 경쟁

E U

**유럽 제1심법원,
구주위원회에 의한 기업결합규제의
역외적용 지지판결**

이 미미한 관계로 중추공항을 거치는 노선에서 종종 더 높은 요금을 청구한다. 저가 항공사들은 5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중추 항공사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교통부의 1996년 연구에서는 저가 항공사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63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American Air사의 조치는 Vanguard사의 캔사스 주 Wichita 및 캔사스시 티 노선을 목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Sun Jet사의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노선 및 Western Pacific사의 콜로라도 주 Colorado Springs 노선도 대상이었다고 당해 소송에서 주장되고 있다.

이는 반트러스트국이 American Air사의 이른바 독점적 영업전략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두 번째 경우이다. 1983년 레이건 행정부 때 동 국은 당시 American Air사의 최고경영자였던 Crandall 회장이 DFW의 주요 경쟁업체였던 Braniff사의 Harold Putnam 회장을 방문하여 가격인상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고 기소하였다. Putnam 회장은 법무부 조사관들을 위해 이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결국 이들 조사관은 Crandall 회장과 American Air사를 제소하여 장래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에 합의하도록 하였다.

■ 1999.5.13, The New York Times

유럽 제1심법원은 3월 25일 기업결합규칙의 역외적용에 대한 유럽위원회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제소에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1) Gencor사는 광물자원 및 금속산업의 영업활동을 하는 아프리카법인이다. Gencor사는 Gencor사와 같이 남아프리카에서 백금금속(PGM)사업을 하고 있는 Implats사의 주식 46.5%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Lonrho사는 광물·금속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법인이다. Lonrho사는 Lonrho사와 같이 남아프리카에서 백금금속 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남아프리카 법인인 East Plates and West Plates사(LPD)의 주식 73%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Gencor사는 LPD사의 주식 27%를 보유하고 있다.

(2) Gencor사와 Lonrho사는 Implats사의 공동지배권을 획득하고 Implats에게 LPD의 단독지배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3) 상기 결합은 남아프리카에 있어 PGM의 채광생산뿐 아니라 이를

공동체(EU)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Implats와 LPD와의 경쟁관계를 소멸시키고 남아프리카에서의 PGM 공급이 종전의 3사(상기 2사와 Ampats)가 아닌 2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남아프리카 당국의 판단

남아프리카의 경쟁당국은 동국의 경쟁법의 의해서 상기 결합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3. EU의 사건수속 경위

(1) 1996년 4월 24일 유럽위원회는 상기 기업결합이 세계 백금금속시장에서 당해 결합으로 발생하는 기업과 Amplats사와 공동으로 지배적 지위를 얻는다 하여 상기 결합으로 공동체 시장과 양립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2) Gencor사는 동 위원회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유럽 제1심법원에 제소하고 유럽합병규칙(이사회규칙 제4064/85)에 의한 유럽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쟁송하였다.

4. 제1심법원 판결의 개요

(1) 법원의 인정

가. 기업결합규칙은 공동체 규모의 결합요건으로서 관계기업이 역내법인이어야 하고, 동 법인의 생산활동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공동체법은 공동체내에서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두게 된다. Gencor사와 Lonrho사의 역내

판매액은 규칙에서 정한 기준인 2억 500만 ECU를 초과하고 있다.

나. 또한 동 규칙의 목적은 공동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상기 결합과 같이 공동체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 공동체 내에서 당해결합이 예견 가능하고 직접적,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관점에서 상기 규칙의 적용은 국제법에 합치한다.

(2) 법원의 인정

가. 제1심법원은 상기 위원회 결정은 공동체의 합병규칙 및 국제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나. 법원은 공동체법은 단독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 뿐만 아니라 합병의 결과 발생하는 기업과 당해결합에 가담하지 않은 1 이상의 기업에 의한 공동적인 지배적 지위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 1999.3.25, 유럽 제1심법원 발표문

유럽위원회, 다이믈러 크라이슬러사 조사 - 역내 자동차 가격설정 관행 관련

유럽위원회는 다이믈러 크라이슬러사가 유럽연합 4개국 판매업자들에 대하여 비거주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개시하였는데, 이로써 동 위원회는 소비자 및 단일시장에 도움이 될 약간의 충격을 가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다이믈러 크라이슬러사가 비난받고 있는 종류의 반경쟁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너무도 오랫동안 유럽의 자동차 구매자들은 EU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결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광대한 가격 차이를 용인하여야만 했다. 유럽위원회는 작년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럽연합 경쟁규칙 위반을 이유로 폴크스바겐사에 대하여 기록적인 1억 200만 유로화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만일 다이믈러 크라이슬러사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결정을 받는다면 똑같이 엄중한 벌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동 위원회는 법규 위반이 입증된다면 다이믈러사의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에 동 위원회가 폴크스바겐사에 부과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0.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위원회가 자동차산업 유통부문을 EU 반트러스트 규칙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적용면제함으로써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동 위원회의 노력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적용면제는 제조업체들에게 EU 전역에 걸쳐 자사 제품의 소매 공급에 대한 비길 바 없는 통제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고 난 후에 이것이 남용되는 현실에 놀란다면 이는 장전된 총을 지급하고 이것이 발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순진한 발상이다.

이러한 적용면제가 고품질의 애프터서비스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더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프랜차이즈를 획득한 판매업체들이 독립적 수리업체들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포드사가 자사의 판매업체 네트워크로부터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인해 내었던 독립적 자동차 수리업체들의 체인인 Kwik-Fit에 대하여 최근 인수제의를 한 것은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상으로 당해 적용면제는 비율과 고비용을 낳았음이 거의 확실하다. EU 대다수 지역에서 이는 유통망 분리 유지에 일조하였으며 판매업체들은 프랜차이즈를 취소하겠다는 제조업체들의 위협에 좌우되는 결과를 맞았다. 이러한 취약한 소매유통 구조는 주거지역 시장의 제품가격이 높아 저가구매를 위하여 찾아온 고객들에게 실령 EU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제품을 공급하지 말라는 제조업체들의 압력에 매우 무력하다.

이러한 적용면제는 그 유용성을 - 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 다하였다. 2002년에 동 면제가 만료될 경우 이를 갱신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효율적인 자동차 단일시장을 달성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정당화될 수 없는 방종을 폐지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또한 자동차 소매,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더욱 활발히 집행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럽 제조업체에게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국내에서 이들을 조작된 시장으로 보호하는 것은 이들이 엄정한 전세계적 경쟁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아니다.

■ 1999.4.15,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EU 경쟁법 개정 제안

196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유럽연합 경쟁법의 개혁이 될 이번 개정에서, 유럽위원회는 거래제한적 관행 사건에 대한 조사의 "지방분권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로써 일부 업무는 각국 당국에 이전된다.

1962년 이후 유럽위원회는 EU 설립조약인 로마조약 85조의 금지대상인 초국경적 가격고정이나 공동생산 협정과 같은 것들에 대해 경쟁법 적용제외를 부여하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고 왔다.

경쟁법 적용제외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협정을 동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종종 장기간의 조사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월 28일 발표된 백서에 담긴 제안들이 실행되면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통제 및 적용제외 부여 체제는 종식될 것이다.

각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은 동 위원회와 함께 85조를 집행할 공동책임이 부여될 것이다. 기업들은 더이상 관련협정을 통지할 의무는 없게 될 것이지만, 이들은 유럽위원회 또는 각국 법원에 이러한 협정이 경쟁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는 있다.

동시에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협정에 대한 경쟁업체들로부터의 이의제기를 조사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또한 가장 심각한 시장력 남용 방지를 위한 규칙도 강화할 것이다.

경쟁부문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4월 28일, 이러한 변화는 동 위원회의 인적 자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거래제한적 관행에 대한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인가 제도는 EU 경쟁법이 유아기상태였던 1960년대에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창설, 유럽연합 구성국 수의 25개국으로의 확대 및 EU 경쟁법 사건의 상당한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체제가 요구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심각한 경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경쟁법 사건들 및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Van Miert는 말하였다.

백서의 발간 이후에는 협의 절차가 개시되며, EU 회원국들 및 이해당사자들은 9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논평을 낼 수 있다.

금년 가을부터 활동하게 되는 새로운 유럽위원회는 이후 공식적 입법제안을 낼 것이며, 이는 EU 각료이사회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2003년 이전에 이러한 규칙 변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 1999.4.29, Financial Times

일 본

공취위, 전력·철도시설 개방실태 조사

전기통신산업의 확대에 따라 전주 및 철도망, 고속도로망을 이용하여 케이블 텔레비전 회선 및 데이터통신용 광섬유를 부설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취인위원회는 4월 17일 전력회사 및 철도회사 등의 공익사업자가 전주 및 철도망 등의 시설을 어느 만큼 다른 회사에 개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익사업자가 같은 계열의 통신회사 및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만을 우대하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 위원회는 6월에 조사결과를 정리한 후 가이드라인의 작성 및 업계에 대한 자율적 규칙 작성의 요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은 전국 도시 부분에 있는 전력회사의 송전선 및 전주, 도시가스의 배관망, 철도선로, 가선, 고속도로 등으로, 텔레비전용 케이블 및 광섬유의 부설상황, PHS(간

이형 휴대전화)의 안테나 설치상황 등을 조사한다. 또한 JR(일본철도) 각사의 역사 점포입차 등에서 JR 관련 기업과 그 외의 기업간에 차별이 없는가 등도 체크할 계획이다.

■ 1999.4.17, 요미우리신문

**미·일, 국제 기업결합심사 신속화
- 독점정책협정에서 대강 합의**

미·일 양국정부는 독점금지정책의 2국간 협정의 작성교섭에서 대강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협정은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하고 있음에 대응하여, 양국의 독금당국이 국제적인 담합행위를 협력하여 단속한다든지, 미·일에 걸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신속히 상호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반트러스트법을 외국의 기업에 적용하는 「역외적용」을 예방하는 조치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심사 신속화로 국제적 기업결합이 한 단계 촉진되는 외에, 독점금지정책을 둘러싼 미·일 마찰의 회피로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협정교섭은 공정취인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가 진행하여 왔다. 합의내용은 5월 3일의 미·일 수뇌회담에서 확인, 올 여름에도 정식으로 체결된다.

협정에서는 미·일 양국에 걸치는 국제적 기업결합 및 제휴는 상호간에 신속히 통보하고, 경쟁상의 문제가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국이 조정할 기회를 마련한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미·일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어 계획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경우를 방지함과 함께 기업결합 인가를 둘러싼 마찰을 예방하여 기업의 전세계적인 기업결합·취득을 촉진한다.

이러한 규정은 예를 들어 기업결합이 상대국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맥도넬 더글러스사간의 기업결합은 유럽연합(EU)이 당초 계획에 난색을 보였으나, 미국과 EU가 독금협정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조정을 거쳐 인가를 받았다. 한편, 국제적 기업결합이라 하여도 새로운 회사의 양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작아 경쟁에의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정은 국제적 카르텔 등의 조사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공취위는 3월, 미·독 기업들과 전기로용 전극에서 카르텔을 맺고 있었다고 하여 쇼와덴코(昭和電工) 등 일본기업 4개 사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국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받으면 원칙적으로 응하게 된다.

일본 국내의 카르텔로 미국의 기업 및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의 제품을 매입한 경우 등에서는 미국당국이 일본의 공취위에 조사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에 의해 미국이 자국의 반트러스트법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국외기업을 심판하는 역외적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권리는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보유한다. 또한 미·일의 독금당국 중 어느 일방이 상대국 기업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당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역외적용으로서는 미국 법무부가 1995년에 일본제지를 기소한 사실이 있다. 일본 국내에서 팩시밀리 용지의 카르텔을 결성,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제품가격도 따라서 인상된 의혹이 있다고 하는 이유였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판유리, 필름 등의 시장에서 부당한 상관행이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이 조사를 요구하면 공취위는 심사 여부를 검토, 미국에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

독점정책에서의 2국간 협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6건이 있다. 일본으로는 최초의 협정이며, 장차 세계 주요 국가가 거의 동일한 경쟁정책의 국제적 구도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 1999.4.23, 일본경제신문

독 일

독일카르텔청, Metro사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결정

독일연방카르텔청은 Metro사에 대하여 Metro사가 Allkauf를 매수한 후 동사 납입업자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까지 소급하여 Metro사에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조정한 후 조정금을

지불토록 지시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금지결정을 하였다.

경쟁제한금지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선을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종속적인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Metro사와 Allkauf사의 합병이 승인된 후 Metro사는 양사에게 상품을 납입하고 있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 조건의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조건의 조정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됨에 따라 연방카르텔청은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에 관한 절차를 개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동 조사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매용의 식료품을 제조하고 있는 40개사의 제조업자로부터의 조사도 포함시켰다. 그 결과 조사대상이 된 사업자의 적어도 반 수 이상이 Metro사의 행위는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는 방해행위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의 견해에 따르면 납품업자는 5억마르크에 못 미치는 매상고를 올리고 있었으며, 동 매상의 75%이상을 Metro사와 거래하고 있어 매트르사에 종속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된다. Metro사는 보다 좋은 구입가격과 구입조건을 공급하여 시행토록 한 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최혜국 대우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 1999.3.2. 독일연방카르텔청 발표문

Hoechst사, 가격고정 사건으로 벌금지불에 합의

독일의 화학제품 및 의약품 회사인 Hoechst사는 5월 5일, 식품 방부제 시장에서 가격을 고정하고 시장을 분할하기 위한 17년간의 국제적 공모에 참여한 데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동 회사는 낙농제품, 제과류 및 설탕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 방부제인 소르빈산염 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위법한 공모에서 동 회사가 행한 역할에 관하여 3,6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하였다.

Hoechst사의 식품원료 사업부 마케팅 부장이었던 Bernd Romahn 또한 1979년부터 시작된 당해 공모에서의 그의 개인적 역할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 25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죄 인정 합의의 일부로서 Romahn과 Hoechst사는 추가적 조사에 관하여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 담당공무원과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당해 담합에 함께 참여한 다른 회사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Hoechst사는 소르빈산염 산업에서의 위법한 공모로 기소된 두 번째 회사이다. Eastern Chemical사는 지난 10월 유죄를 인정하고 1,1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현재 30개 이상의 대배심에서 국제적 카르텔 의혹을 조사중인데, 이들은 20개국 이상의 사업활동에 걸쳐

있다.

■ 1999.5.6, Financial Times

기 타

코카콜라사와 Cadbury사, 브랜드 교환에 합의 -호주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반대로

Cadbury Schweppes사와 코카콜라사는 4월 14일, 호주 경쟁당국이 영국 그룹의 Schweppes사 호주 음료사업 부문의 코카콜라사와의 매각을 반대함에 따라 호주에서의 청량음료 브랜드 교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브랜드 교환에 따르면 코카콜라사는 동 회사의 일련의 지역적 브랜드들을 넘겨주는 대가로 Cadbury사의 국제적 3대 음료인 닥터 페퍼, Schweppes 및 캐나다 드라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Cadbury사는 호주 청량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사의 경쟁업체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Cadbury사는 미국 외 청량음료 사업부문을 정리하면서 호주 사업부문도 "추후에" 매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수가능업체로서는 호주 3위의 업체인 펄시사 및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벤처 자본가들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주식공모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협정은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의 인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규제당국의 우려사항을 참작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들 두 회사는 밝혔다.

이러한 발표는 작년 12월 코카콜라사가 Cadbury사의 미국 외 청량음료 사업부문을 18억5,000만 달러에 취득하기로 합의된 기업결합 완성에 대한 이들 회사의 결의를 강화한 것이었다.

코카콜라사가 이미 청량음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규제당국은 당해 취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당해 합의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연말 이전에 당해 기업결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2계획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런던에 소재한 Investec Henderson Crosthwaite의 식음료산업 분석가인 David Lang은 말하였다. “당해 기업결합이 몇몇 국가에서 인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경쟁업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왜냐 하면 이들 두 회사는 이미 Coca-Cola Schweppes Beverages라는 단일한 조직을 통하여 자사 음료들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멕시코에서는 이 기업결합이 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

Cadbury사의 말로는 호주에서의 이러한 타협안이 가격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타협안으로 동 회사는 호주에서의 청량음료 사업부문에 잔류하게 될 것이다. 동 회사의 Schweppes Cottee 자회사는 Sunkist와 Oasis 같은 소규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irks, Halls 및 Shelleys와 같은 코카콜라사의 지역적 브랜드가 추가될 것이다.

이 자회사는 호주 청량음료 시장에서 두 번째 규모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만일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코카콜라사는 불안전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쟁당국의 이의는 해결될 것이다.

■ 1999.4.15, Financial Times